

의안
번호

206호

「 2024년도 일반·특별회계 세입·세출예산안」

검 토 보 고 서

운 영 위 원 회

2024년도 일반·특별회계 세입·세출 예산 (안) 검토보고

2023 11. 28.
전문위원 한상규

1. 제 출 일 : 2023 11. 7. (의안번호 : 제 206호)

2. 제 출 자 : 성북구청장

3. 제안이유

- 2024년도 성북구 일반·특별회계 세입·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.

4. 관련법규

- 지방자치법 제142조(예산의 편성 및 의결)
- 지방재정법 제36조(예산의 편성)

5. 2024회계연도 세입·세출예산(안)개요(의회사무국)

- 세입예산안 : “없음”
- 세출예산안(총괄)

(단위 : 천원)

회 계 별	예 산 현 황			
	2024년도	2023년도	전년대비 증 감 액	증감률(%)
계	4,423,681	4,372,370	96,311	9.8
지방의회운영지원	2,359,729	2,315,129	44,600	9.8
행정운영경비	2,063,952	2,012,241	51,711	9.7

【세부사업별 예산현황】

(단위:천원)

정책	단위	세부사업명	예산액	전년도	증·감(△)	비고
			4,423,681	4,372,370	96,311	
지방의회 운영지원	의회운영내실화	의정활동 지원	1,662,569	1,627,656	34,913	
		의회운영 기본경비지원	448,660	429,303	19,357	
		청사시설 유지관리	71,160	87,030	△ 15,870	
		의정활동 평가	5,000	5,000		
	국내외 의정교류	국내 의정교류	34,500	34,500		
		국제 교류협력	50,800	50,800		
	의정활동 홍보	구의회홈페이지 및 키오스크유지 관리	14,800	14,800		
		의정활동 자료발간	72,240	66,040	6,200	
행정운영경비	인력운영	인력운영비	1,810,795	1,787,332	23,463	
	기본경비	기본경비	253,157	224,909	28,248	

< 2024년 성북구의회 사무국 세출예산안 >

- 의회사무국의 예산은 전년대비 9.8%인 증가한 9,631만원이 증가한 44억 2,368만원이며, 이는 구의회 제반 운영에 따른 예산으로서 2024년도 성북구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 1,004,858,507천원의 0.44% 규모임.

- 의회사무국은 10개의 세부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, 전년도와 편성 예산이 동일한 세부사업은 ① 의정활동평가, ② 국내 의정교류, ③ 국제 교류협력 ④ 구의 회홈페이지 및 키오스크 유지관리 등 4개 세부사업 임.
- 전년도 대비 예산이 증가한 세부사업은 5개 사업으로 ① 의정활동 지원 34,913천원, ② 의회운영 기본경비지원 19,357천원, ③ 의정활동 자료발간 6,200천원, ④ 인력 운영비 23,463천원, ⑤ 기본경비 28,248천원이 증가 하였음.
- 주요 예산 증가사업내용은
 - 의정활동 지원비 : 월정수당, 의원정책개발비로 월정수당은 2023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 1.7%를 적용하여 인상하였고
 - 의회운영기본경비지원 : 기간제근로자등 보수, 사무관리비와 정례회 및 임시회 속기 진행보조 수당의 단가 인상, 제 9대 후반기 원 구성에 따른 의원 수첩 제작, 의정관련 홍보물 게재, 사회복지무요원보상금 등이며
 - 의정활동자료발간 : 의정활동홍보 영상물 제작,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
 - 인력운영비 : 2024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 (2.4%)을 반영한 성북구의회사무국 소속 직원 26명 인건비 편성
 - 기본경비 : 사무관리비로 (2023. 6. 1.자) 정책지원관 6명의 신규채용직원 급량비 증가분
 - 국내여비 : 2024년도 성북구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성북구의회사무국 정원 42명의 기본업무추진 여비를 편성 하였음

○ 전년도 대비 예산이 감소한 사업은

- 청사시설유지관리비 : 15,870천원 감액으로 전년도 시설비중 의회청사 배수로 공사비 등 시설비를 2024년도에는 공공화장실 경보기 설치 예산으로 감액하여 편성함

* 기타 편성목별 예산의 증 감 세부사항은 세출예산사업명세서를 참고하기 바람

6. 검토의견

- 이상과 같이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4년도 성북구의회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,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본경비 등을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 142조 1) 등 관련 법에 부합되고 예산 편성지침 등에 적합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됨.

※ 관계법령

- 1) 지방자치법 142조(예산의 편성 및 의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·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, 시·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시·도의회는 제1항의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, 시·군 및 자치구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.
-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.
- 2) 지방재정법 38조(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 등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 재정의 운용 여건, 지방재정제도의 개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필요한 정보로 구성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②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지출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. <신설 2014. 5. 28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> [전문개정 2011. 8. 4.]